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정선희 의원 발의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
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20호로 2017년 11월 13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
부터 발의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·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
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 지원근거를
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 및
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

경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허용 근거를 규정함

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기본법」,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·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구민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비문해 구민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,

-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영등포구 거주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

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,

-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성인비문해자,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제공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교육기본법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무교육)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(履修)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2

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